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
------------	-----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이 개정되어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변경, 재산세 납기 조정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군세 세목 조정

-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안 제3조 제2항)

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경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50%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 한 가액(안 제26조)
- 토지.건축물.주택 세율 인하(안 제27조)

다. 재산세 납기조정(안 제27조의2 제2항)

-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라. 자동차세 세율조정(안 제39조 제1항)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이하 140원으로 조정
- 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이하 18원으로 조정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나. 관계법령 : 별첨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4조중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5,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 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초과	24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4. 선박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1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중 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1500시시이하"를 "1600시시이하"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1000분의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8절 종합토지세를 삭제한다.

제77조 내지 제87조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2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내지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7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8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8조의1 및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1(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8조의2(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9조 내지 제58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u>8. 종합토지세</u></p> <p>③ (생 략)</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u>건축물</u> ·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4조(과세대상 등) ----- -----<u>토지</u> · <u>건축물</u> · <u>주택</u> · <u>선박</u> 및 <u>항공기</u> ----- ----- ----- ----- -----.</p>
<p>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②권리의 양도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p>	<p>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p>

현 행	개 정 안
<p><u>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p> <p><u>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u></p> <p><u>⑥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p>	<p>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u> <u>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u> <u>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u> <u>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u> <u>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u>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u>

현 행	개 정 안
	<p><u>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u></p> <p><u>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u></p>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p>제26조(과세표준) ①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선박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u><신 설></u>	제26조의1(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가. 주택 <u><과세표준></u>	제27조(세율) ①-----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u><과세표준></u> <u><세율></u>

현 행	개 정 안
1,200만원이하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	1,000분의 3 <u>3만6천원+1,200만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u> <u>5만6천원+1,600만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0</u> <u>11만6천원+2,200만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0</u> <u>36만6천원+3,000만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50</u> <u>85만6천원+4,000만원</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70</u>
나. 골프장 · 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선박	다. 분리과세대상 (1)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시(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현 행	개 정 안								
	<p>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0만원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초과</td> <td>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생 략)	<p>4. 선박</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5. 항공기</p> <p>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②(현행과 같음)</p>								
<신 설>	<p>제27조의1(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현 행	개 정 안
	<p>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u><신 설></u>	<p>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p>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p> <p>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p> <p>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평창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3. <u>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5. <u>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u> 6. <u>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u>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u> 3.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4.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 5. <u>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6.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현 행	개 정 안
<u>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u>	<p>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p>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p> <p>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u>건축물</u> 4. 농어민 교육시설용 <u>건축물</u>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u>건축물</u>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p>	<p>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p> <p>①-----</p> <p>-----.</p> <p>1. ----- <u>부동산</u></p> <p>2. ----- <u>부동산</u></p> <p>3. ----- <u>부동산</u></p> <p>4. ----- <u>부동산</u></p> <p>②----- <u>부동산</u></p> <p>-----.</p>
<p>제32조(<u>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u>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u>) -----</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u><신 설></u>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 및 주택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삭제>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1. 승용자동차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시시이하</td> <td>18원</td> <td>800시시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시시이하</td> <td>18원</td> <td>1,000시시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시시이하</td> <td>19원</td> <td>1,500시시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시시이하</td> <td>19원</td> <td>2,000시시이하</td> <td>200원</td> </tr> <tr> <td>3,000시시초과</td> <td>24원</td> <td>2,500시시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p>1의2. ~ 6. 생략 ②(생략)</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3,000시시초과	24원	2,500시시초과	22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00시시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600시시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의2. ~ 6.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	-----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3,000시시초과	24원	2,500시시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	-----	-----	-----																																																		
제46조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	제46조 ①----- ----- 1,000분의 215-----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u><신 설></u>	제60조(납세의무자) ① ~ ④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 판매 ·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2조(세율) ① ~ ②(생 략) <u><신 설></u>	제62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u>제8절 종합토지세</u> <u><제77조 내지 제87조></u>	<u>제8절 종합토지세<삭제></u> <u><삭제></u>
제89절(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9절(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략)</p> <p>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제9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②----- ----- ----- ----- 재산세과세대장----- ----- -----.</p>
<p>제9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p>	<p>제9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 토지·건축물 및 주택----- ----- 토지·건축물 및 주택----- -----</p>

현 행	개 정 안									
<p>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자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p> <p>-----</p> <p>-----</p> <p>-----</p> <p>②-----</p> <p>----- 토지 · 건축 물 및 주택 -----</p> <p>-----</p> <p>-----</p>									
<p>제95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95조(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6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과세대상</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과세기준일</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건축물</td> <td style="padding: 2px;">매년 6월 1일</td> <td style="padding: 2px;">매년 7월 16일 ~ 7월 31일</td> </tr> <tr> <td style="padding: 2px;">토지</td> <td style="padding: 2px;">매년 6월 1일</td> <td style="padding: 2px;">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제96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p>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u>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u>
제9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u>1,000</u> 분의 2로 한다.	제97조(세율) -----1,000 분의 1.5-----.
제9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 세의 납세고지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 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 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u>재산세</u> ----- ----- ----- <u>재산세</u> ----- -----.
<신 설>	<p>제98조의1(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현 행	개 정 안
	<p>②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u><신 설></u>	<p>제98조의2(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액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 7의2. 주행세
8. 농업소득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삭제 <2005.1.5>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전문개정 2005.1.5]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